

---

# 2017년 8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17. 6.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 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6.12.(월) 10:00 ~ 12:40
-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代)박상보, 안희철, 한상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9건
  - (2017-17)‘재단법인 00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 보고(00)’ 결재문서
  - (2017-18)‘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결재문서
  - (2017-25)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요청한 공문
  - (2017-19)‘법률자문 의뢰요청(00 잠정폐쇄 가능 여부)’ 결재문서

- (2017-20)'00 회계지도 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 결재문서
- (2017-21)'00 현장지도·점검 안내' 결재문서
- (2017-22)'00 운영관련 자료제출 요청', '00 운영관련 외부 법률 자문 의뢰', '00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재의뢰' 결재문서
- (2017-23)'00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 결재문서
- (2017-24)'2016년 민간위탁 00 정산서류 제출' 결재문서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부분인용
- 기각
- 인용
- 인용
- 인용
- 인용
- 기각
- 인용
- 인용

【 의안번호 2017-17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재단법인 00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 검토 보고(00)’ 결재문서

〈○○○ 위원〉

- 저는 제1정보공개심의위원장 김지미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권혜진 위원님, 안희철 위원님, 한상희 위원님, 김진호 시설계획과장님 직무대행이신 박상보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8건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각 주심위원님께서서는 해당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안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7명 중에 총 5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첫 번째 의안부터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7호 복지정책과 소관 청구

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안전 소관부서 팀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법인·시설정책팀장 ○○○입니다.

(복지정책과 ○○○ 주무관 동석)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17호 복지정책과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17호 복지정책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재단법인 00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 보고 등의 결재문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행정처분 사유가 이미 소멸되었고, 공개 시 재단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나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예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본 심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유사사례로 기재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자산운용방법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공개해 달라는 것을 보면 경영 그 자체와 관련된 아니라 기본재산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팀장>

○ 저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과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한 정보는 사단법인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사단법인의 회원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재단법인은 자산 자체가 법인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공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 재산 자체는 당연히 등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등기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 팀장>

- 애초에 법인이 출연한 것이 농지여서 현금으로 대체출연을 하고, 재산이 등기 부동산상과 정관상이 같도록 등기 후 증빙서류를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 위원>

- 등기제도라는 것이 재단법인이 재산을 공시해야 될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촉구를 한 것인데 그것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경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팀장>

- 실제 영업행위만이 경영이고 법인의 본질적인 경영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이십니까?

<○○○ 위원>

- 등기 이행하라는 것은 경영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등기가 되면 어차피 재산이 공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촉구하는 것인데 왜 이 경영상의 문제라고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 출연 이행 촉구 공문이고 하나는 검토보고 두 가지를 청구했는데, 정관변경 신청 사항 검토보고의 변경 전과 후의 동산, 부동산 토지에 대한 평가액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보고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평가액이 나와 있어서 재단법인의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 공문은 공개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공문 안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촉구공문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될까 의문이 듭니다.

〈○○○ 주무관〉

- 공문내용에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써 있는데 이 이후 서류를 다 제출해서 행정처분사유가 소멸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법인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서류제출을 늦게 해서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외부에서 보면 법인을 경영하는데 약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

- 그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인데 그것까지 주무관청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불이익을 전제로 해서 법이 강제되는 것입니다.
- 검토보고서도 계좌번호는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런 것을 가리고 부분공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법인의 소유 토지의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아니라도 토지가 어느 정도 있고 그 가액이 어느 정도이며,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영업상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재단법인의 제도상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재단법인의 운영현황 중 재산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가 됐을 때 그동안 공개가 되어 왔다면 계좌번호와 몇 가지만 제외하면 충분히 공개가 가능할 것 같고, 재단이라면 이런 재산내역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이 재산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계좌번호나 지번을 빼고 총액과 동산이 얼마 있고 구체적인 지번을 제외하고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이 재단의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팀장>

- 그것은 재단에 예상되는 불이익을 판단하기 이전에, 법인 자체는 개인하고 같은 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우회를 통해서 알고 싶은 기관의 정보를 다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인 자체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인에 청구해서 공개할 내용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개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인이 생산한 정보이지 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위원>

- 정관 검토보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생산한 정보니까,

<○○○ 팀장>

-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지 법인의 정보는 저희가 생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서울시의 모든 정보가 다 시가 원시적으로 생산한 정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서울시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겠죠. 일단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고 서울시에 공개청구가 들어온 것이니까요. 부서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현저하게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지금 비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부분공개를 했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부분공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팀장〉

- 저는 일단 법인은 왜 이것이 청구됐을까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실제 이 자산규모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하면 자산총액은 얼마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이미 알 수 있는 정보를 요청했을 때는 부분공개가 아니라 이 실체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보이고, 부분공개로서 제공되는 내용은 청구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궁금해하지 않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청구인이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별개로 공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공개된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팀장〉

- 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재산에 관한 실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비공개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던 것이지, 실무자의 의견으로 비공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 때문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의신청 요지에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이의신청 요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팀장>

- 저희도 왜 이것이 국민의 재산과 신체하고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청한 사항은 법인의 기본요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불법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누구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부당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면 주무관청으로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고유행위이고, 법인의 기본인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원>

-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안건이 많아서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의견을 밝혀주시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단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공시대상이고, 따라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문은 특별히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두 번째 검토 보고는 재산의 세목에 관련된 계좌번호, 은행명이라든지, 부동산의 경우 면단 위 이후의 세부지번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재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저는 일단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 같은 경우는 청구할 때도 ‘4차’라고 기재한 점을 봐도 4차 이행 촉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촉구한 공문이 공개된다고 했을 때 애초에 비공개 결정이었던 7호에 해당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 다음에 나머지 검토보고가 좀 고민이기는 한데요, 사실 대표자명이나 이런 것은 아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나오기는 할 텐데,

<○○○ 팀장>

- 저는 이 청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요청한 것이 국민의 재산하고 생활 보호하고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정보는 원래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이며, 그 비공개에 대한 예외사항이 단서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보가 비공개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만 우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청구인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정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의회가 꼭 청구인 이의신청 사유에 기속되어 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비공개 결정 통지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촉구 공문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보고 공문의 경우에는 동산의 예금계좌나 소재지 세부지번에 있는 법인 자체의 사적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제 의견은 이행촉구문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현저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공개의견입니다.

〈○○○ 위원〉

- 이 검토보고에 붙임문서가 있는데, 이 붙임문서도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비공개를 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항의 변경내용 부분도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어서 현재의 상황은 변경 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 전 것을 공개하는 실익이 있을 것인지도 변경 후와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도 이행촉구 같은 경우는 이미 4번에 걸친 이행촉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만약에 ‘미제출하면 행정처분 예정이다’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행정처분을 언제 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는 않고 기본재산 출연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꼭 이 문서를 통해서 새롭게 취득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행촉구는 공개를 해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서는 공개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진행되어 왔고, 또 이 공문이 진행된 다 하더라도 크게 영업상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공문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 ‘재단법인 00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는 모든 위원이 공개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두 번째 것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서는 (가)법인현황은 다 공개를 해도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위원〉

- 네.

〈○○○ 위원〉

- 정관변경 신청 사항에서 변경 전과 변경 후는 어떻습니까? 아까는 변경 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 위원〉

- 둘 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 전, 변경 후 자체가 다 공시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세목만 비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

- 그러면 붙임은 어떻게 할까요?

<○○○ 위원>

- 붙임도 마찬가지로 취지인데요, 이렇게 변경허가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정보 부분은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붙임문서도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네요. 그 외에 나머지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도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위원>

- 법무법인하고 변호사 이름 가려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 위원>

- 예전에 심의했던 것을 보니까 이것이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사례가 있던데,

<간사>

- 대부분 다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답변내용인 경우는 비공개합니다.

<○○○ 위원>

- 저도 이것은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 붙임3 신청구비서류를 보는데요, 계좌 잔액증명서부터 민감한 정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기부자 인적사항은 빼다 쳐도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붙임4 법률자문 회신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구비서류에는 좀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서 비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 위원>

○ 붙임문서1, 2는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앞서 의견하고 같으신 겁니까?

<○○○ 위원>

○ 네.

<○○○ 위원>

○ 저는 붙임문서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확인되는 정보일 수 있는데 부동산의 번지를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번지라는 것은 꼭 서울시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면 확인 가능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 팀장>

○ 법인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공개범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렇게 해서 기 공개된 것이라면 굳이 번지를 가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붙임은 계좌번호라든지 개인정보 부분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제가 볼 때는 심층사항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첨부내용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그 첨부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안 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서 자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법인현황은 어차피 이것은 공개된 정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변경 신청사항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동산의 금액이나 부동산의 구체적인 지번을 제외한 평가액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해 보입니다. 붙임문서 같은 경우도 1번, 2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청사항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 위원님하고 의견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3, 4번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도 ○○○ 위원님에 동감입니다.

〈○○○ 위원〉

- 그러면 3명이 지금 의견이 같고 ○○○ 위원님도,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네, 동의하시고, ○○○ 위원님은 비공개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2017-17호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본재산 출연 이행 추구하고 관련해서는 5명의 위원님 모두 공개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정관변경 신청 사항 검토 보고와 관련해서는 출석하신 5명의 위원 중에 네 분께서 법인현황은 공개하고 신청사항과 관련해서는 평가액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구요. 붙임문서는 1번, 2번은 같은 취지로, 3번, 4번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이의신청 건은 부분인용으로 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17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7-18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결재문서

〈○○○ 위원〉

○ 다음 의안번호 제2017-18호 도시관리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장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18호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18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결재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에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조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이미 다른 언론에서 기사화 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역 미래비전에 관한 사항 및 기사화 된 일반계획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은 방금 간사가 낭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의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의신청 요지에 보면 ○○일보에 기사화 된 사항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일관성과 투명성 여부를 얘기하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역 미래비전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를 해 달라. 그리고 기사화 된 일반계획도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타당한 요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저희가 받은 것은 비공개 자료 방침이라고 간략화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

중간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이의신청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은 이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팀장〉

- 네, 방침이라는 것이 시장님께 PT 보고를 하고 그 결과보고를 작성한 것이고, 아마도 청구인이 원하는 것은 PT자료일 것 같습니다.

〈○○○ 위원〉

- 용역보고서 연구기간이 7월까지입니까?

〈○○○ 팀장〉

- 일단 용역기간은 8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그 용역보고는 아직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현재까지 연구방향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기사가 뭔가 공식화된 저희의 입장이 외부에 기사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사내용에서도 저희의 연구방향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0에 대한 주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일관성 있게 제기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으로 특별한 저희의 변화된 입장이 기사화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이 내용 자체가 서울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기자 분도 아마 국토부 입장까지도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이 용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 드리면 일단 한 차례 보고는 했지만 최종 내부의사결정 과정까지는 아직 더 남았고, 그 의사결정 이후에는 이것이 외부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 국토부와의 협의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서울시가 할 수 있

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해 나갈 방향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공식화 될 수 있는 시점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무리된 시점으로 봐야 될 겁니다.

-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자의 적극적인 취재활동으로 인해서 나간 기사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답변으로 공개하는 것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공식화된 입장으로 대외발표를 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정책의 결정과정과는 약간 별도로 용역보고서가 나가고 완료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가 끝나면 언제쯤 용역보고서 자체는 공개가 될 예정입니까?

<○○○ 팀장>

- 저희가 생각하는 보고서 공개시점은 국토부와의 협의 이후라고 봅니다. 물론 용역기간은 8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늦어진다고 하면 용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되는 바람에 국토부 내부에서의 일정이 좀 더 미루어지고 있고, 때문에 저희도 협의시점이 미루어지는 등 이 용역을 시작할 때와 좀 달라진 외부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용역이 좀 더 가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위원>

- ○○일보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 그림과 사진은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 주신 겁니까?

〈○○○ 팀장〉

- 그 그림들 중에 서울역의 노선 단면 잘라놓은 사진은 저희 용역에서 비슷한 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그림들은 용역에서 나온 그림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용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문위원으로도 참석해 주시는 국토연구원 전문가 분들이 외부에서 포럼을 할 때도 여러 번 주장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각색해서 그런 그림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국토부가 참여하는 포럼이나 외부전문가 포럼에서 이런 방향성을 주장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방향성을 이어받아 국토부에서 관련용역을 6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 용역 수행기관도 한국교통연구원이다 보니 비슷한 단면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용역 때문에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 비공개 자료라고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요약자료인데 담당자로서 혹시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팀장〉

- 아닙니다. 거기에 내부의사결정에 위한 토론 의견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로 나가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내용이 공식화된 내용으로 나간다면 신정부 출범 후 정부정책과제들이 결정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가 직접 실행되어야 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 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부동산에 관한 기대심리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 혹시 청구인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 팀장>

○ 모릅니다.

<○○○ 위원>

○ 전혀 그동안 관계가 없었던 분이신 겁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일보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문의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동일하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능성 중 한 가지이고,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해야 되는 문제들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 기사에 대해서 정정이나 이런 것은 굳이 안 하셨죠?

<○○○ 팀장>

○ 그렇죠. 기사를 보면 ‘결정되어 있다’라고 나와있지 않고 ‘이런 내용을 연구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인터뷰가 없었으면 달리 대응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큰 틀에서는 국토부와 저희가 국토부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앞으로 협의를 해 보자’라는 정도로 발맞추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크



게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용역이 언제 끝날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팀장>

○ 지금 국토부에서는 저희의 기본방향을 받아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용역을 6월에 발주했는데, 그 용역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저희 쪽에 연말까지 한 번 결론을 내보자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럼 주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 위원>

○ 지금 뉴스 체크를 해 보니까 ○○일보만 기사가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매체들에서도 여러 가지 언급들이 그 후에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 위원>

○ 보니까 00 개발과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일 내용 중 비공개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제외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개괄적인, 기공개된 내용 정도 수준에서라도 부분 공개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팀장〉

- 그런데 저희가 기공개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방향이라고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사실 한 가지 방향만이 담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시가 그것을 그냥 공식화된 입장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시점이 되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 형식이 됐든 아니면 공동발표가 됐든 공식적인 절차로 공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용역보고서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단계 걸러낸 중간결과보고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결과보고에 써 있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 팀장〉

- 그런데 그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실현여부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

- 저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점부터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팀장〉

- 물론 그런데 저희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공개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국토부에서 이제 검토가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와 협의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시작될 상황인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검토만 가지고 공개하면 정부와의 협의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그것도 권한이 없는 일들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공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의 거의 초기단계인데 공개될 경우 마치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시는 겁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이런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용역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을 쭉 진행하면서 초기단계, 중간, 준공 이렇게 나누어서 자문도 받고 의견수렴도 하고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담당팀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 용역 같은 경우 현재 초기단계이고 관련부서와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개하는 경우 마치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명되면 나중에 의사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행정을 신뢰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 위원님은 부분공개 의견이신 것이죠?

<○○○ 위원>

- 네.

<간사>

- 부분공개 할 정보가 있습니까?

<○○○ 위원>

-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부분공개 할 정보가 지금 주신 비공개자료 중에서는 별첨은 공개는 아닐 것 같고요,

<간사>

- 부분공개라고 하는 것이 00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인데요, 주무과에서의 입장은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 위원>

-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고, 추후에 행정절차상 공청회나 국민의 의견을 받을 기회는 절차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 팀장>

- 저희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원래는 마지막 7월 정도에 공청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변경이 있으니 아마 일정대로 되지는 않고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비공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제일 큰 변수가 국토부와 협의 전이라는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국토부와 협의가 되면 결정이 나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국토부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착수보고 자체를 공청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

○ 어쨌든 국토부와 협의가 들어가고 끝나는 순간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일단은 1차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방향은 협의를 통해서 정하겠지만 당연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봐야 되겠죠.

<○○○ 위원>

○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국토부하고 의견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사실상 합의이지 않습니까? 협의를 완료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협의결과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이 그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00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는 국토부와 논의를 할 것인지 여부까지도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 팀장>

- 용역상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두 단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 초기단계에서 1차적인 큰 방향만 정해놓고 전문가들 발제를 통해 심포지엄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심포지엄이었고, 그때도 철도분야의 발제자 분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단면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셨던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절차가 일단은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로 계획하고 있고,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한 7월 정도에 공청회를 하는,

<○○○ 위원>

- 그러면 그때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 팀장>

- 당시에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7월 정도에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별도의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 위원>

- 지금 계획으로는 국토부와 협의하기 전에는 서울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언제쯤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도 향후 일정을 올해 들어서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토부와 협의 없이 공개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일단은 국토부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대외발표나 공청회 형식으로 어느 정도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상황도 1차적으로 국토부와 접촉이라든지 공유를 해서 그쪽의 반응과 대략적인 스탠스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3.0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現 시장 체제도 역시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보고사항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 자료에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붙임문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팀장〉

- 저희가 생각하기에 청구인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공개 의 부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고, 아마 이날 발표한 PT자료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유사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고, 기사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개발업자들이 말하는 소문을 듣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제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로 들어오는 민원과 시민들의 배신감도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 위원〉

- 그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런 폐해는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옆으로 새가서 누군가가 뒤로 얻는 조그만한 정보들을 키워

나감으로써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공개된다면 그런 폐해라는 것은 오히려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간사〉

- 부분공개라고 하면 정보의 부분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분리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00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부분공개라면 어떤 부분을 공개하고 어떤 부분을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 위원〉

- 제 의견을 정리해 드리면 저는 바로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개하는 방법에서 각 개별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붙임문서는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팀장〉

- 이 붙임문서가 본문의 분야별 논의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붙임의 내용이 비공개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이 분야별 논의내용도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논의의견부터 분야별 논의의견, 그리고 붙임문서가 모두 같은 내용인데, 붙임의 내용을 분야별로 카테고리화 해본 것이 분야별 논의내용이고, 그 중에서 추려낸 것이 주요 논의의견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 붙임내용을 비공개하자는 이유는 시장의 발언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의미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 팀장〉

- 사실 이 주요논의의 의견이 시장님 발언을 추려낸 의견인 겁니다.

〈○○○ 위원〉

- 그 부분은 익명화 되어 있으니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붙임 의견의 경우에는 ‘시장’이라는 정책결정자의 명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저는 비공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팀장〉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사가 난 후에 문의가 많았는데 기사가 나간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서울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취지로 회신은 하고는 있습니다.
- 다만 이 정보의 경우 여러 방안 중 한 가지 방향만이 담겨있고, 미확정의 내부보고서를 공식적인 루트로 외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내용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기관의 내부결정사항 자체, 내부에 논의 중인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시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공개될 경우에 마치 00라고 기정사실화 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분야별 논의내용을 보면 이것이 비단 00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과도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논의단계임에도 마치 서울시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럼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부분공개이고 세 분이 비공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18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7-25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검토를 요청한 공문

〈○○○ 위원〉

○ 다음은 같은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017-25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영팀장 ○○○라고 합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25호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25호 도시관리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요청한 공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류로 결정되어 내부검토 단계에

있으며,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계속되는 비공개 행정으로 비리의 의혹이 가중됐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청구인은 지난 5월에 해당부지 용도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보류사유, 용도변경 관련 심의를 위하여 시가 검토 검증한 자료, 양천구청 열람공고 회신공문 및 양천구보건소 공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지난 7차 심의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팀장은 간사가 방금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의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우선 이것은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공문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우선 제가 지난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것에 대한 회의록을 봤더니 청구인이 이 의료시설용지 맞은 편에 위치한 쪽의 토지 소유자가 맞습니까?

<○○○ 팀장>

- 맞는 편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 위원>

- 이 의료시설부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팀장>

- 청구인께서는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대상지의 용도변경으로 상가가 들어설 경우에 본인을 포함한 다른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 어떻게 보면 청구인한테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공문을 제가 보니까 첨부자료도 없고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검토의견을 달라.’라는 취지의 보완 요청 공문이지 않습니까? 의료시설부지 용도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요청사항에 불과한데 이것이 비공개 사유 5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 팀장>

-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내부검토문서에 해당되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양천구청장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다시 요구를 하는 사항인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됐을 경우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위원>

-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공개가 됐을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서울시 측의 미확정된 의견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비공개 결정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이것은 그냥 양천구한테 의견을 한번 제시해 바라라는 정도의 공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천구한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이고, 이 검토의견을 제시해 달라라는 공문이 공개된다고 해서 크게 업무상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단순히 내부논의 중인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했을 때 업무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비공개 대상인데 이것이 공개가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팀장>

-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추가 보완자료들을 받아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저희들의 내부검토의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이런 문서를 다르게 해석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민원이 받

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것이 도시계획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용 중에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과 밀도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들이기 때문에 확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우려되어 비공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결정통지서를 보면 청구인 최초 요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공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잘못 왔으니까 다시 달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 팀장>

- 이 분이 여러 차례 청구하셨는데 지난번 제7차 심의 때 세 가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기각결정이 됐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공개했던 문서에 대해서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문서와 다른 문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 지금 공개 요청 드린 자료가 도시관리과의 답변에 근거한 것이고, 답변 내용이 '의료시설 용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조치 등 양천구청에 보완 검토를 요청했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 자체는 민원 회신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알려준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는지를 다시 청구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신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이 곳이 용도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것이네요?

<○○○ 팀장>

- 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 위원>

- 보통 이런 것을 할 때 해당구청장 의견을 받으니까?

<○○○ 팀장>

- 해당구청장이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열람공고 후 들어온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반영하겠다, 미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시로 보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토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라고 양천구청에다 요청을 드린 겁니다.

<○○○ 위원>

- 해당지역이 원래는 요양병원 건립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중지됐나봐요?



〈○○○ 팀장〉

- 이 토지용도 자체는 의료시설로 되어 있었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병원하고 요양병원, 이 두 가지를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장사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다른 일반상가도 들어가게끔 해 달라라고 양천구청을 통해서 주민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내용상 부족하다라고 의견이 제시돼서 토지소유자가 재검토해서 재열람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 청구인은 왜 보완 요청한 공문을 청구했을까요? 저 같으면 보완 요청한 공문에 대한 회신을 청구할 텐데, 아마도 이 공문을 받으면 각각의 항목을 보고 다시 회신내용을 청구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의도입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저는 이 공문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주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 위원〉

- 저는 이것까지 비공개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공무의 투명성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구청

장한테 의견을 묻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공개되면 추후에 이것에 대한 회신내용이 또 청구되고 또 한 번 결정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회신에서 어떤 것을 비공개할지 공개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공개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팀장>

- 지난번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논의과정 속에서 열람공고, 회신공문에 대해서 비공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지금 현재 지구단계계획 변경 결정 관련 보완 요청 공문서 내용을 보면 검토 의견을 제시하라고는 했는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상은 방향성이나 주관부서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의 의료법인 설립 불허 관련'을 만약에 거꾸로 '허가와 관련'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방향은 민간이 느낄 때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일반적이라면 공개 의견을 내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지금 이 일대의 토지주들은 이미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공사가 계속 허가됐다가 취소됐다가 요양병원이 주민들이 건립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해당구청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의 보완 요청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보류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일종의 상담민원 같은 것으로, 아직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공개하는 경우 그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던진 겁니다.
- 또 하나는 이것이 보류된 심의의 토론의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 검토의견보다는 ‘불허와 관련됐다. 결정취지와 관련됐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민원을 유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 검토의견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를 보시면 ‘당초 지정용도 결정 취지 등을 고

려해서 의료시설 용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및 관련근거자료 제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래 의료시설로 용도가 지정됐다는 것과 의료시설 용도 폐지를 신청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이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위성을 조금 더 내놔 봐라라는 것이라서 저는 1번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천구의 의료법인 설립 불허와 관련하여 다른 이런 비영리법인 등을 통한 의료시설 도입 가능성에 대한 양천구의 검토의견을 달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두 번째가 마치 계속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든 비영리법인이든 다른 의료인 등을 통해서 계속 의료시설로 유지할 하는 것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 세 번째 '용도 폐지가 되면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팀장>

- 사실 도시계획결정의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위원회의 결정과 또 다른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오해해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7차 심의회 때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기각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 공개된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 팀장>

- 공개된 자료는 심의결과가 보류됐다는 내용, 심의날짜, 그 다음에 입안 전에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사전에 의견 회신했던 공문 이런 것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 물론 이 정보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정보라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국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큰 폐해를 야기한다면 미리 예측을 막아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변경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기존에 의견을 모두 고수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명의 위원 중에 공개 의견이 3명, 비공개 의견이 2명입니다. 참석위원 5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17-25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7-19~24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법률자문 의뢰요청(00 잠정폐쇄 가능여부)’결재문서(2017-19)
- ‘00 회계지도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 결재문서(2017-20)
- ‘00 현장지도·점검 안내’ 결재문서(2017-21)
- ‘00 운영관련 자료제출 요청’, ‘00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의뢰’, ‘00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재의뢰’ 결재문서(2017-22)
- ‘00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 결재문서(2017-23)
- ‘2016년 민간위탁 00 정산서류 제출’ 결재문서(2017-24)

〈○○○ 위원〉

- 의안번호 2017-19호~24호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지역공동체담당관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19~24호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19호~24호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00 관련 8건의 결재문서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주관부서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나 새로운 운영주체 선정 등 향후 의사결정이 남아있어 공개 시 해당업무 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서울시가 회계검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주민 간의 신뢰부족으로 단정하여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은 간사가 낭독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6개가 같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결국은 내용은 하나이고, 00라고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주민거점공간입니다.

<○○○ 위원>

○ 청구건이 6개이기는 한데요, 배경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 주무관>

○ 마을활력소라는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활력소는 2015년부터 주민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세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재산인 가압장 중에서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서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자치구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신청을 해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방식으로 마을활력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OO는 첫 번째인 유희가압장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거점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 2015년 7월 3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약 70여 명의 추진위원을 공개 모집을 했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에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 번 정도 올려서 2016년 6월 달에 동의안이 가결돼서 9월 달에 협약을 체결 및 개소식을 개최하여 약 세 달간 운영을 하는 듯 싶었으나, 12월 달에 운영위원 간에 갈등이 번지면서 1월 27일 OO 총회에서 ○○○을 비롯한 운영위원 세 명을 해임하게 되었고, 그 후에 해임한 측은 8명이고 해임된 측은 3명인데 양 측이 계속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 6월 현재까지도 지금 해임한 측에서는 협약과기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고, 해임된 측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지금 협약이 해지된 상황입니까?

〈○○○ 주무관〉

- 협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협약서상 3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6일자로 문서로 통보를 했고, 3개월 후인 8월 16일 날 자동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첫 번째부터 보면 19호가 ‘법률자문 의뢰 요청’입니다. 이 00 잠정폐쇄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인데, 이것이 2개월 동안 잠정폐쇄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한 자문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3개월 전에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을 통해서 밝히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협약이 해지가 되면서 해당공간도 폐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잠정폐쇄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일시적 폐쇄 후에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 주무관〉

- 당초 2월 달 법률자문 당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가 다시 여는 방향을 생각했는데 갈등이 완화될 기미가 안 보여서 협약을 해지하고 폐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

- 이 자문을 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가 지도감독권한에 근거해서 잠정폐쇄하는 것이 적절한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근거가 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은 것이죠?

〈○○○ 주무관〉

- 그렇습니다.

〈○○○ 위원〉

- 20호는 ‘회계지도 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인데, 회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나보죠?

〈○○○ 주무관〉

- 해임된 측에서는 운영위원들이 회계 관련해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외부 회계법인이라 조직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서도 회계검증을 해 봤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은 지금은 운영위원에서 해임된 측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회계지도점검 결과 같은 경우는 수신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임되지 않은 운영위원들은 이 문서를 다 받아본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이 前 운영위원인데 해임된 측에 굳이 주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회계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측에 회계지도점검 결과 부정이 없었다라는 것이니까 의심을 덜어주려면 오히려 공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주무관>

○ 회계점검 결과 관련해서는 이 공문 자체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회계사와 회계법인에서 설명해 준 요약서를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인지 확인차 공문을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공개를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결과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인데 ‘회계사가 약간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이라서,

<○○○ 위원>

- 점검내용에 보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항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점만 적시를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정조치가 필요한 항목들이 꽤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주무관>

- 저희가 회계점검을 두 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진행할 때는 약 7가지의 크고 작은 회계 운영상의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 공문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송부를 하고 소명을 받아서 2차적으로 회계검증을 했을 때는 회계사 분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 위원>

- 해임된 분들이 해임된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 주무관>

- 해임된 날짜는 2017년 2월 16일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 위원>

- 해임된 이후에 이 회계지도점검 결과가 나온 것이네요?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서 비공개 의견이시면 이것이 8월이면 운영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내부검토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공개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랑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한다라는 것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으로는 이 00이 00구 00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현안에 밝고 주민들과 가까운 00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00구청장님과의 면담도 진행하고 구 담당인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이 사안에 관해서는 해지통보를 했으니까 날짜만 가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저 쪽에서 특별히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른 사정이 없고, 그 부분도 별도의 것이거든요.

〈○○○ 주무관〉

- 네. 일단 정보공개 청구나 아니면 응답소 민원, 현장민원도 한 10번 정도 진행했고, 갈등조정이라는 절차를 15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더 확산되는 기미가 보여서 차라리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영주체, 그러니까 자치구가 직영하는 체제로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자동적으로 협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조정 절차나 회계검증이나 법률자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지금 저희가 비공개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갈등조정이나 행정심판, 민사소송 같은 절차들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공개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분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 너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비공개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 21호에 ‘현장지도·점검 안내’를 보면 이것은 사실 의례적인 현장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정도고 민감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1호에 한정해서 보면 ‘현장지도 점검 안내’ 이 문서를 비공개할 만한 이유가 뭘까요? ‘언제 현장지도를 나가겠다. 이용현황을 파악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점검하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 주무관〉

- 21호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현장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안내공문이었는데 이것도 청구인이 이 민원이랑 갈등조정 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뭘 했는지, 점검 시 실제로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닌지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청구인이 그런 의심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런 문서를 청구했고, 이것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공개를 해 주면 간단한 겁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무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다음 22호를 보면 ‘운영 관련자료 제출’, ‘외부 법률자문 의뢰’, ‘재의뢰’ 세 문서인데요, 해임된 분들은 이 총회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해임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 봐요?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총회의 유효성, 적법성 입증자료, 회원명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쟁이 되고 있는 총회의 적법성을 판단해 볼테니 이런 자료들을 달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들을 서울시가 요구했는지 자체가 공개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 그러니까 총회의 적법성 관련해서는 강사들이 회원인지 아닌지, 운영위원이 추진위원에서 바로 운영위원으로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넘어가는 것, 정관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와 그래서 1년이 도과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쟁점들이 총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쟁점들이다라는 것은 양측이 해임한 측이나 해임된 측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그 다음 23호 보겠습니다. 23호가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문서인데, 이것은 수신이 운영위원회하고 00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생산일자가 2016년 9월 21일자이니까 최초에 이 00을 설계할 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이것은 분쟁이 생기기 전의 얘기네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이미 결정이 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던 와중에 분쟁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애초에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00 운영위원회가 수신입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청구인이 운영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서 아닙니까?



〈○○○ 주무관〉

- 네. 2016년 9월 같은 경우는 해임되기 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공무를 보냈을 때 같이 봤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문서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24호는,

〈○○○ 주무관〉

- 24호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마찬가지로 이미 공개된 문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들은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십니까?

〈○○○ 위원〉

- 저도 21호, 23호, 24호는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

- 그 전에 이 19호부터 24호까지 보면서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공개가 되면 업무상에 내부검토과정에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 만한 문서가 어떤 것입니까?

〈○○○ 주무관〉

-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호하고 24호 같은 경우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됐고 청구인이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19호, 22호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20호 회계지도 같은 경우도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청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검증을 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똑같은 의혹을 제기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비공개 사유로 기재하신 것이 ‘지금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이 00을 다시 한 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것과 이 청구인들이 기존에 운영위원들과의 내부갈등 과정에서 법적분쟁 중인 것과는 전혀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정 시 비공개 사유로 든 것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과 연관돼

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제가 봤을 때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것들은 법률자문 같은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걸려있지만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

- 지금 19호와 22호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19호 같은 경우는 답변이 온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형식으로 잠정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협약상 적당하냐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기존의 협약내용이 공개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불이익이 있거나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민간위탁방식에서는 협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협약에 근거해서 행정지도도 했고 폐쇄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이 공개될 경우에 새로운 방식의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까?

<○○○ 주무관>

- 아무래도 기존 민간위탁방식이 법인격 있는 단체나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민간위탁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한 주민들의 모임, 임의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자치구 직영이나 다른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법률자문의뢰 요청이 세 개이지 않습니까? 19호하고 22호는 두 개인데, 이것은 다 의견서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저희가 요청을 한 공문입니다.

<○○○ 위원>

- 요청공문 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문의뢰는 누구든지 헛갈리니까 의뢰한 것인데, 물론 첨부파일들이 많아서 이런 첨부자료들이 다 공개가 됐을 경우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질의 1, 2, 3기 기재되어 있는 의뢰서를 공개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위원>

- 이것이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러한 문제들을 법률자문을 의뢰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 주무관>

- 법률자문을 의뢰를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이미 어떤 내부적인 검토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공문에도 부서의 입장이 담겨있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안전이 많으니까 19호부터 그냥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의견만 간단 간단하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호부터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요. 잠정폐쇄 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운영위원이나 前운영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 주무관〉

○ 2월 초반에 지역구 시의원 사무실에서 그런 면담으로 얘기한 적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가 만약에 잠정폐쇄에 대해서 결정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면 공개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잠정폐쇄 하는 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것이 두 달 동안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정보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19호는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는 지금 현재 아직도 갈등상황에 있는데 법률자문 내용이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닐까. 서울시의 입장이 과거부터 이미 정해진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진행된 사항들에 아직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 첨부물에도 내용들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 위원〉

- 그런데 이 협약서 자체가 이 청구인이 前운영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협약서 같은 경우는 모든 운영위원들이 다 공유된 내용이기는 한데, 협약서에 대해서도 2016년 9월 달에 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의 정관내용과 2015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단체 설립할 때의 정관내용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분쟁상황은 맞지만 자문의뢰 요청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지금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내부검토과정에 있고, 또 이 문서들을 8월 이후에는 다 공개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부검토과정을 고려해서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제2017-19호는 집계 결과 결과 참석위원 5명 중에 3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19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20호로 넘어가겠습니다. 20호는 회계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갈등상황과 소송 분쟁 중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 이것을 소송의 자료로 이용하고 그런 이유라면 비공개가 맞는데 주무부서에서 제시하신 비공개 사유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 위원〉

- 여기 마을활력소 전체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무관〉

- 00만의 재정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 네.

〈○○○ 주무관〉

- 재정규모가 되게 다양하기는 한데 일단 시설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시설비는 5억 정도가 들어갔고, 개소 이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수입이 약 700~800만 원 정도고 지출도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총회 이후에 갈등과 분쟁 때문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작년도 4/4분기 수입과 지출은 약 700~8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 위원〉

- 회계지도를 했고 회계지도 결과 '문제 없음'으로 답변을 받았더라는 것까지는 청구인이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죠?

〈○○○ 주무관〉

- 맞습니다. 저희가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지도를 하게 된 것도 청구인이 회계에 대해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 위원〉

- 공문에 의하면 추가점검내용을 다시 송부했지 않습니까.

〈○○○ 위원〉

- 해임된 사람들이 1월 16일자로 해임됐다고 그랬고, 점검일을 보면 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결국은 점검된 내용이고 그 사람들은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인데 굳이 공개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 위원〉

- 그렇죠. 사실은 회계점검기간은 이 사람들도 운영위원으로 참석했던 기간이지 않습니까?

〈○○○ 위원〉

- 대부분 보면 횡령이나 그런 것보다는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은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대부분이 그 전년도 얘기들이니까 공개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공개입니다.



<○○○ 위원>

- 저도 공개입니다.

<○○○ 위원>

- 저도 공개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2017-20호는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은 인용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20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21호 행정지도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나가겠다라고 안내하는 것에 불과해서 저도 공개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 일동>

- 동의합니다.

<○○○ 위원>

-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017-21호는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인용하고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그 다음에 22호가 이제 문제네요. 그러면 23호, 24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3호, 24호는 주무관님도 아까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

면 23호, 24호에 대해서 혹시 비공개 의견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23호, 24호는 공개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일동>

○ 네.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23호, 24호는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22호에 대해서만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인데요, 첫 번째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내용이 법률자문 의뢰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혹시 총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는 것에도 간담회나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주무관>

○ 갈등조정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법률자문과정을 거치고 있다고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 위원>

○ 지금 총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주무관>

○ 총회 적법성 관련해서는 일단 내·외부 법률자문 결과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

은 다 받았고, 저희가 5월 11일자 이해관계자 회의할 때 총회가 적법하다는 얘기를 드렸을 때도 계속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인을 비롯한 해임된 측 3명이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 위원>

○ 그럼 민사소송에서 총회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겠네요?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주요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법률자문의뢰서에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개해도 좋은 정보입니까?

<서기>

○ 서울시 법률고문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 건에 대해서 이 세 분의 변호사가 자문을 했다라는 것이,

<서기>

○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요, ‘서울시 고문변호사’ 해서 명단 정도는 공개가 됩니다.

<○○○ 위원>

○ 그것은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문의뢰서를 보면 논점이 무엇이 있고, 논

점별로 양 쪽 모두의 의견을 다 밝히고 있고, 논점이 세 가지가 있다 정도는 양쪽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서울시가 특별한 어떤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22호와 관련해서 법률자문 의뢰부분이 왜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만 더 소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주무관〉

- 서울시의 입장이 뉘앙스적인 측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해임된 측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총회가 적법하다는 얘기를 수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특정한 입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그러면 ‘자료제출 요청’ 공문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공개해도 될 것 같고요. ‘법률자문 의뢰’ 및 ‘재의뢰’를 보면 재의뢰는 별 첨부자료나 내용도 없어서 여기에 보면 수신자에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름만 제외한다면 공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고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수신자나 이런 것들만 삭제하면 부분적으로만 공개하면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 그리고 ‘의뢰’ 공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비공개하되, 또 첨부자료가 다수 있는데 첨부자료는 비공개를 하고 자문의뢰 내용만 공개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는 어떤가요? 담당부서에서 제시한 5호에 따른 비공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범무법인, 변호사명을 지우는 것은 6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자료나 이런 것을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그것은 5호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 위원님 의견은 22호와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요청은 공개인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

- 그 다음에 법률자문 의뢰와 관련해서는,

<○○○ 위원>

-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문을 요청한 수신자인 범무법인, 법률사무소는 비공개하고, 그 다음에 첨부자료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하고 의뢰서만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 ‘재의뢰’ 같은 경우에도 수신자인 자문을 의뢰한 범무법인 주소리스트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첨부자료가 별지1에서부터 이런 협약서고요.

<○○○ 위원>

○ 네.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는 첨부자료는 비공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이신 겁니까?

<○○○ 위원>

○ 질의내용은 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6페이지까지.

<○○○ 위원>

○ 네, 맞습니다. 6페이지까지는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주십시오.

<○○○ 위원>

○ 말씀하신 대로 8월 되면 이 사건이 종결되는데 굳이 그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공개해서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법률자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22호는 전체 비공개입니까?

〈○○○ 위원〉

- 저는 이 부분 22호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자료제출 요청 내용에도 보면 총회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다툼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양쪽의 분쟁에 또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19호에서 비공개 의견을 냈던 것과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비공개 의견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에서 3명이 제2017-22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각 의견이므로 기각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안번호 제2017-2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 직권심의 대상 선별 결과 】

〈○○○ 위원〉

- 이의신청 건은 다 오늘 심의했고요, 혹시 직권심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72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심의하지 않은 것이 72건입니다. 그런데 72건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공개기준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할 실익이 있거나, 그리고 담당부서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이런 선정기준을 통해서 비공개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직권심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4건을 선정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심의회에서 직권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간사가 직권심의 선별결과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그럼 이것으로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